##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08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 : 윤준병 • 박용갑 • 문대림

김교흥 • 허 영 • 주철현

이원택 · 송옥주 · 민병덕

서영석 · 강준현 · 김우영

박희승 • 백선희 • 정동영

김태선 · 허성무 의원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 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가 테러에 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에서는 총기류와 폭발물을 다루는 연방기관인 ATF(B 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가 이러한 새로 운 기술을 이용한 총기의 제작·생산·소지·사용에 관하여 감시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소지·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삼차원프린팅사업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2.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한 모의 총포(「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모의총포를 말한다)의 제작·소지·유통의 위험성에 대하여 삼차원프린팅사업자를 대상으로실시하는 교육·홍보
- 3. 삼차원프린팅 사용 관련 정보의 수집·유통
  제21조제2호 중 "제16조를"을 "제16조제1항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제16조를"을 "제16조제1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제16조(준수의무) (생 략) < <u>〈신 설〉</u>	개 정 안 제16조(준수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삼차원프린팅사업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른 대테러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한다.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 2.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한 모의총포(「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모의총포를 말한다)의 제작・소지・유통의 위험성에 대하여 삼차원프린팅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제21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	보	통
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	서기	刊
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	정
을 명할 수 있다.		

- 1. (생략)
- 2. <u>제16조를</u>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한 경 우
- 3. (생략)
- 제22조(영업정지 등)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 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 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 야 한다.
  - 1. (생략)
  - 2. <u>제16조를</u>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한 경 우

제21 <i>조</i> 	도(시정명령) 
	 현행과 같음)
2. 🗷	세16조제1항을
	현행과 같음)
제22조 	도(영업정지 등) ① 
 1 (	현행과 같음)
	원 8위 (월 8년) 세 16조제 1항을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